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종합감사]

● 세월호 특조위 정부상대 소송 “활동 종료 법적 근거 없다”

사태 세월호 특조위, 정부상대 소송 “활동 종료 법적 근거 없다”

기사출처: 뉴스 1 | 2016-10-17 11:00:27 | (주)인베스티 | @10월 뉴스 | 0/0



소송대리인단 “6개월 이상의 활동기간 남아있어”

【서울=뉴스1】 임종명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17일 정부와 정면 대립했던 활동기간 문제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공무원보수지급청구)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와 특조위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6월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석한 데 비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 2017년 2월3일까지 활동기간이라는 입장이다.

특조위 조사관 소송대리인단은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및 위원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 없다”며 “오허려 현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2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활동기간 등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물론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조위)가 17일 정부와 정면 대립했던 활동기간 문제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 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다.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 4일로 판단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및 위원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 없다”

●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일지

-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공문발송(2015.2.2.)
 - 질의내용 :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종료일 및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법제처의 법령심의 위원회 참석 요청(2015.2.16.)
- 해수부 법령심의 보류 요청(2015.2.24.)
-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철회(2015.3.30.) - 특이사유 없음**

● 정부위원회 현황 자료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거창사건 심의위원회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0.1.15	2000.5.16	2000.7.10	2000.10.17
친일진상규명위원회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친일재산조산위원회	2005.12.29	2008.12.29	2006.6.29	2006.7.13
과거사정리위원회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6.25 남북피해 위원회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014.11.29	2015.1.1	2015.5.11	2015.1.1

● 세월호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관련 규정

구분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위원회 존속기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	6개월 X 1회 = 6개월
보고서 작성 등 추가기간	3개월
위원회 최대 존속기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9개월(1년+6개월+3개월)
위원회 존속기간의 기산일	불명확(이견 있음)*
위원의 임기 시작일 특별규정	법 시행일(2015.1.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과 관련한 법제처 의견

- | | |
|---------------------------------------|------------------------------|
| ① 2015.1.1.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위원 임기개시일) | |
| ② 위원에 대한 인사발령일 (2015.3.9.) | ③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일 (2015.3.5.) |
| ④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일 (2015.3.9.) | ⑤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5.1.1.) |
| ⑥ 위원회 예산 배정일 (2015.8.4.) | ⑦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일 (2015.7.27.) |

● 법제처 정보화사업 계약현황(2007~2015년, 2016년)

연도	발주계약		독점계약							
			소계				A업체		B업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5	1,858	2	40%	969	52%	2	969	0	
2008	7	4,422	4	57%	3,768	85%	3	3,108	1	660
2009	5	4,130	3	60%	3,421	83%	2	2,866	1	555
2010	5	3,658	3	60%	2,992	82%	2	2,328	1	664
2011	3	3,740	2	67%	3,626	97%	1	1,784	1	1,842
2012	4	4,235	2	50%	3,676	87%	1	1,672	1	2,004
2013	4	4,127	3	75%	3,282	80%	1	1,790	2	1,492
2014	5	4,488	2	40%	1,499	33%	0	-	2	1,499
2015	5	4,434	3	60%	1,795	40%	0	-	3	1,795
합계	43	35,092	24	56%	25,028	71%	12	14,517	12	10,511

※2016년 - B업체 6개 사업 중 3개 사업, 총 사업비 53억 원 중 28억 원(53%) 계약

● 법제처의 정부입법절차 안내 중 법제처 심사

연도	2013	2014	2015	2016 (6.30.기준)	계
평균 소요기간	17.6일	14.9일	13.3일	7.9일	13.4일
법률 법령심사 전체건수	252건	318건	233건	94건	897건
접수당일 심사완료건수	17건	41건	29건	15건	102건
접수 다음날 심사완료건수	12건	15건	19건	21건	67건

-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하게 됩니다.

• **단계별 소요기간 예시 평균 20~30일**

● 2015년 담뭍세 인상 관련 법령심사는 단 하루

지방세법 법령심사 일지

입법예고일	심사접수일	의뢰부처	법률안명	심사완료일
2014.9.12. ~ 2014.9.15.	2014.9.16.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2014.9.16.

개별소비세법 법령심사 일지

입법예고일	심사접수일	의뢰부처	법률안명	심사완료일
2014.8.7. ~ 2014.9.3. 2014.9.12. ~ 2014.9.15.	2014.9.16.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2014.9.16.

● 국내의 차액 환수 사례

1979. 3. 7. 사례

당시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180%로 인상하면서, 개정 시행령 부칙을 통해 제조자 및 판매자에게 세율 인상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

1989. 1. 1. 사례

1989. 1. 1. 이전에 반출된 미판매 담배에 과세사각이 발생하여 이를 관련 개정 법률 부칙을 통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 외국 담뱃세 인상 차액 환수 규정



담뱃세 인상마다 관련 법률 부칙에 담뱃세 인상 직전에 일정수량(20,000개비) 이상의 담배 보유자에게 담뱃세 인상차액 신고 및 납부토록 규정



2009. 4. 1.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인상차액을 4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토록 하여 재고차익 부당 귀속 문제 해결

● 담뱃세 등 인상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은 담뱃세의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각각 마련하면서 **재고차익 환수 대책을 검토하여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차익이 국고 등 세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재고차익 발생액을 분석한 결과, △△ 등 **담배 제조사와 도·소매상 등 담배 유통사는** 2014. 12. 31. 현재 계 4억 9,865만여 갑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뱃세 인상일인 2015. 1. 1. 이후에 유통사에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재고차익 계 7,938억여 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담배 소비자는 동 차익 상당액을 더 부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부담으로 발생한 위 재고차익을 세입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